
출산육아휴직 보험료할인특약

01. 출산육아휴직 보험료할인특약 목차

제1조【목적】.....	3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보험료 할인 대상계약】.....	3
제4조【보험료 할인 신청대상】.....	3
제5조【보험료 할인 신청에 관한 사항】.....	4
제6조【보험료 할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제7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6

01. 출산육아휴직 보험료할인특약 약관

제1조【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단, 저축성 특약은 제외)합니다.)의 보험료 할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사망, 장애 또는 생존 등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주계약**: 제3조(보험료 할인의 대상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의 주계약으로, 기본이 되는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료 할인 대상계약】

이 특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품의 계약 중 유효한 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단, 저축성 특약은 제외)하며, 이하 '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회사가 업무보고서 상 어린이보험으로 분류한 상품
2. '어린이', '자녀', '아이', '베이비' 등 상품명에 어린이와 관련한 단어를 포함한 보장성 상품

【보험료 할인 대상계약 공시】

보험료 할인 대상계약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life.co.kr) '상품공시실' 내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할인 대상계약 목록'에서 공시합니다.

제4조【보험료 할인 신청대상】

① 대상계약의 계약자(미성년자인 계약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가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보험료 할인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때,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단,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기간 중인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 2항 제4호 등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2(근로시간의 단축임용 등)에 따라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 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료 할인 신청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대상계약 당 1회에 한하여 계약자가 제4조(보험료 할인 신청대 상)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하 ‘보험료 할인’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하고 있는 해당기간 내에 보험료 할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할인 신청서(회사양식)
 2.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출산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이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신청한 경우
 2. 주계약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갱신형 주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 포함)
 3. 보험료 할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단, 변경 전 계약자가 변경 후 계 약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4.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시납인 경우

【예시 안내】

< 계약자가 두 명의 자녀에 대해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경우 >

· 2026년 7월 1일 첫째 자녀 출생, 2029년 12월 1일 둘째자녀 출생 가정

할인 대상	할인 신청 요건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첫째 자녀 대상계약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둘째 자녀 대상계약	미가입	신청 불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단, 대상계약 당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가입한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 신청 불가**

·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첫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미해당하여 **할인 신청 가능**(단,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할인 신청 가능)

둘째자녀 계약은 해당 대상계약의 피보험자 출산에 해당하여 **할인 신청 불가**

· 첫째 및 둘째 자녀의 대상계약을 각각 가입한 후, 계약자(또는 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중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 계약 모두 **할인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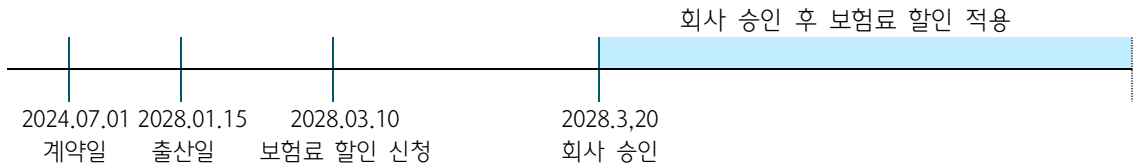
※다태아의 경우 두 명의 자녀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대상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제6조【보험료 할인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제4조(보험료 할인 신청대상) 및 제5조(보험료 할인 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대상계약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할인 금액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 따릅니다.
- ② 제5조(보험료 할인 신청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접수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날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하여 영수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시기에 관한 예시】

- 주계약: 비갱신형, 월납, 10년납
- 계약일(2024.07.01), 출산일(2028.01.15), 보험료 할인 신청(2028.03.10), 회사가 승인한 날(2028.03.20)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2028.01.15~2029.01.14)에 보험료 할인 신청시,
회사의 승인 후, 1년간 보험료(월납보험료 12회) 할인 적용



- ③ 주계약이 제3조의 보험료 할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도 할인대상 보험료에 포함(단, 저축성 특약은 제외)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해 대상계약에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 시점부터 1년(12개월)간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제7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